

전기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내용을 소개하오니 잠
조하시기 바라며, 별표와 별지 양식 등은 협회 인터넷 사이트(www.
keea.or.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기획관리팀 ☎ 02)875-447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중개정령

산업자원부령 제90호('99. 12. 2)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을 “전기사
업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2조제9
호”를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9호”로,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
으로, “(제조업은 용량 100킬로와트)”를 “(제
조업 및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
량 100킬로와트)”로 하고, 동항제3호나목을 다
음과 같이 하며, 동호다목중 “시장, 대규모소
매점, 도매센터”를 “대규모점포”로 한다.

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
한 체력 단련장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심야전력의 범

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제18조의2(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
과기준) ①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
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
표 2의 3과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의 규모·위반행위
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의 범
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의3(과징금의 납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
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
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
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
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본문중 “공급규정”을 각각 “기본공급약관”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중 “공급규정”을 “기본공급약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공급규정”을 “기본공급약관”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공급규정”을 “기본공급약관”으로 한다.

1. 기본공급약관안

제2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공급규정”을 “기본공급약관”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공급규정”을 “기본공급약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그 신청이 변경공사로서 대체공사 또는 수리공사인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 폐지공사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을 “그 신청이 폐지공사인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목중 “임시공사”를 “부득이한 공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31조제4항 및 법 제32조제4항”으로, “임시공사”를 “부득이한 공사”로 하며, 동조제2항중 “임시공사중 통상산업부장관에게”를 “부득이한 공사중 산업자원부장관에게”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공사를”을 “법 제31조제4항 및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공사를”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중 “임시공사”를 각각 “공사”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을 다

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중 “임시공사계획”을 “공사계획”으로 하고,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중 “임시공사”를 각각 “공사”로 한다.

법 제31조제4항 및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7조 본문중 “법 제34조·법 제36조 및 법 제37조”를 “법 제34조 및 법 제37조”로 하고, 동조제2호중 “기사 1급”을 “기사”로 하며, 동조제3호중 “기사 2급”을 “산업기사”로 한다.

제3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 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터빈·압력용기·액화가스저장조·액화가스용기·가스홀더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인 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의 압력을 가하게 되는 부분(이하 “내압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내압부분에 있어서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연속하지 아니하는 구멍에 관의 연결이나 밸브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설치된 짧은 관, 보강재 또는 보강링을 붙이기 위한 용접만을 한 보일러 등(내압부분에 이들 용접만을 새로이 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전 검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물을 사용하는 용기 또는 관으로서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미만의 것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20킬로그램
2. 액화가스용 용기 또는 관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용기외의 용기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관외의 관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측방향이음에 있어서는 제곱센티미터당 5킬로그램)

제40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에 있어서 보일러·압력용기·배관·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 등에 관한 공사
 가. 기술기준에 의한 비파괴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나. 맞대기 용접부에 있어서는 기술기준에 의한 기체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다.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제41조중 “10일전”을 “7일전”으로 한다.

제48조중 “10일전”을 “7일전”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2조제2항제3호의 건물에 설치된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나목(1) 및 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 및 노래연습장,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기타 다중이용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전기사용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제52조제1호중 “전기기사 2급 이상·전기공사기사 2급이상 또는 전기분야 기능사 1급의”를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로 하고, 동조제2호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4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제5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

- 가. 별표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중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 나. 별표 4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제58조제4항의 표의 자격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전압 600볼트이하 용량 200킬로와트미만인”을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용량이 200킬로와트 미만인”으로, “전기수용설비의”를 “전기수용설비 및 제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의”로 한다.

자 격 기 준
동일분야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동일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중 “법 제4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로서 별표 제8의3의 관리대행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 통상 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를 “별표 제8의3의 관리대행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로 한다.

제62조의 표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란 제1호중 “전기분야기능사 2급이상”을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으로 하고, 동관 제2호중 “전기분야기능사 2급 이상”을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으로,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6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4(경미한 변경사항의 신고) ①법 제54조의6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
의 변경
 2.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필요한 총공사기
간내의 공사공정표의 변경
 3.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총소요자금 내역
의 변경
 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준공후 운영계획
서의 조직·인력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
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
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서
 2. 제67조의3제1항 각호의 서류중 기재내용
이 변경된 서류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본문·제3항, 제5조제1
항 본문·제2항, 제5조의2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본문, 제6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8조의2제1항제6호·제2항, 제21조제1항제6호,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
조, 제30조, 제32조제1항 본문, 제38조제3호, 제
39조제3호, 제4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동항제1호 내지 제3호, 제49조제1항, 제54조제1
항 전단·제2항, 제55조의2제1항 본문, 제61조
의2제3항 본문·제4항, 제66조제1항·제2항 본
문·제3항 전단·제4항, 제67조제1항·제4항,
제67조의2 본문, 제67조의3제1항 본문·제2항
본문 및 제69조제1항·제2항중 “통상산업부장
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8조 본문, 제16조, 제20조, 제31
조,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2조제1항, 제
53조제1항 본문 및 제59조제1항 본문중 “통상
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 전기란의 자격기준란 제2호중 “전기기
사 1급”을 “전기기사”로 하고, 동란 제3호중
“전기기사 2급”을 “전기산업기사”로 하며, 동
란 제4호중 “전기기사 1급”을 “전기기사”로 하
고, 동란 제5호중 “전기기사 2급”을 “전기산업
기사”로 하며, 동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별표 8 기계란의 자격기준란 제1호중 “열원동
기”를 “산업기계”로 하고, 동란 제2호중 “기계
기사 1급”을 “기계기사”로 하며, 동란 제3호중
“기계기사 2급”을 “기계산업기사”로 한다.

별표 8 토목란의 자격기준란 제2호중 “토목기
사 1급”을 “토목기사”로 하고, 동란 제3호중
“토목기사 2급”을 “토목산업기사”로 한다.

별표 8의3 제1호 지정기준란 중 “3억원 이상”을
“2억원 이상”으로, “1,000좌”를 “200좌”로 하고,
동표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 술 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 력 2년 이상인 자 5명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 무경력 4년 이상인 자 10명 이상 ○ 보조원은 동일분야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동일분야에 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5명 이상
---------------------	--

별표 8의3 제3호의 지정기준란 중 “60㎡”를 “영
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고, 동표 제4호의 지
정기준란의 개인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 인 장 비	접지 저항측정기, 절원저항측정기 (500V, 100M Ω), 후크온미터, 고 압 및 특고압검전기 및 저압검전 기: 기술인력(보조원을 제외한다) 1명당 각 1대
------------------	--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면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면의 첨부서류란 제2호를 삭제하며, 동서식 뒷면중 “통상산업부”를 “산업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의3서식, 별지 제12호의4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면,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

식 앞면, 별지 제28호서식 앞면,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별지 제30호서식 앞면, 별지 제32호서식 앞면, 별지 제41호서식 앞면,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2호의2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별지 제49호서식 앞면, 별지 제50호서식 앞면,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69호서식 앞쪽, 별지 제70호서식 및 별지 제71호서식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뒷쪽, 별지 제15호서식 뒷면, 별지 제18호서식 뒷쪽, 별지 제19호서식 뒷쪽, 별지 제20호서식 뒷면, 별지 제21호서식 뒷쪽, 별지 제24호서식 뒷면, 별지 제28호서식 뒷면, 별지 제29호서식 뒷면, 별지 제30호서식 뒷면, 별지 제32호서식 뒷면, 별지 제41호서식 뒷면, 별지 제49호서식 뒷면, 별지 제50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69호서식 뒷쪽중 “통상산업부”를 “산업자원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중개정령

산업자원부령 제92호('99. 12.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기술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본문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 전력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 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하고, 동조 단서중 “면허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단체”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중 “협회”를 각각 “단체”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건축법 제9조제4항”을 “건축법 제19조제4항”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기사업자”라 한다)가 반복 시행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도서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가. 전기사업자에 소속된 전력기술인이 작성한 설계도서

나. 전기사업자가 전력기술인에게 발주하여 작성한 설계도서

제15조제1항 및 제3항중 “협회”를 각각 “단체”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영 제11조제2항이 규정에 의한 감리업자”를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4항중 “협회”를 각각 “단체”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중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공사를 도급받은 자”로 한다.

제23조중 “협회”를 “단체”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4조제3항”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고시”를 “공고”로, “협회”를 “단체”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주된 사무실내에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등록변경신고 등)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이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받은 단체는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신고인에게 이를 교부하고,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신고사항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자본금의 증가를 말한다.

제28조제1항중 “뭇쓰게 된 때에는”을 “뭇쓰게 된 때 또는 주소지가 다른 특별 시·광역시 또는 도로 변경된 때에는”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한국전력기술인협회”를 “전력기술인단체”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협회”를 “단체”로 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기타 단체와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34조제1항중 “법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를 “법 제26조제2호 및 제3호”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3]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의2제1항관련)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처 분 기 준			
		일반전기 사 업 자	발 전 사 업 자	특정전기 사 업 자	전기사업자 외의 자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허가 또는 사업변경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1호	허 가 취 소	허 가 취 소	허 가 취 소	허 가 취 소
2. 법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2호	허 가 취 소	허 가 취 소	허 가 취 소	허 가 취 소
3. 전기사업자(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외국인투자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허 가 취 소	허 가 취 소	허 가 취 소	허 가 취 소
4.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4호	사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사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사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사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5. 법 제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4호	-	-	-	사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6.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4호	사업정지 6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사업정지 3월	사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사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7.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4호	사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사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사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
8.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4호	-	사업정지 3월	-	-

위 반 행 위	해 당 법조문	처 분 기 준			
		일반전기 사 업 자	발 전 사 업 자	특정전기 사 업 자	전기사업자 외의 자
9.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4호	사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	-
10.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 받은 수급계약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4호	-	사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사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11.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공급조건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4호	-	-	사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12.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4호	사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사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사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
13.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4호	사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사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사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
14.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통지방법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4호	사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	사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

[별표 6]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제46조관련)

구 분	대 상	시 기	비 고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가. 기력·내연력·가스터빈발전소 및 수력(양수)발전소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계통 (2) 가스터빈·보일러·열교환기(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를 제외한다) 및 발	4년 이내 2년 이내	(1) 내지 (3)의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공센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구 분	대 상	시 기	비 고
나. 원자력발전소	전기 계통 (3) 수차·발전기계통 (1) 증기터빈 (2) 열교환기 및 발전기 계통	4년 이내 20개월 이내 20개월 이내	(1) 및 (2)의 전기 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자가용전기설비 가. 발전설비 기력·원자력·내연력 및 가스터빈 발전소(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제외한다) 나. 전기수용 설비 및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계통 (발전기 계통을 포함한다) (2) 가스터빈(발전기계통 포함)·보일러·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중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것을 제외한다) (1) 병원·공연장·호텔·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예식장·지정문화재·단란주점·유흥주점·목욕장·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kW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3) (1) 및 (2)의 설비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kW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4) (3)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 또는 비치하는 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kW 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	4년 이내 2년 이내 2년마다 2월전후 2년마다 2월전후 3년마다 2월전후 4년 이내	(1) 및 (2)의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1) 내지 (4)의 전기설비로서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수전설비는 당해 발전기계통과 같은 시기에 검사를 실시한다. (1) 내지 (4)의 전기설비로서 자가용 송·배전선로를 포함한다.

주)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기간중에 실시한다.